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의 정 부 시 장

1. 사 업 명: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2.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년 8월 27일(목) ~ 9월 18일(금) 18:00까지

※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031-828-2892)로 접수 여부 확인

나. 접수방법: 구비서류^{붙임1} 참고 방문, 우편, 이메일(wkdtjddlr123@korea.kr) 중 택 1 제출

-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의정부동, 의정부시청)

다. 문 의 처: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31-828-2892)

5. 주요 지원내용(세부내용^{붙임2},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붙임3})

(단위: 백만 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한도 (道+市)	지 원 내 용
노동 복지	노동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40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60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도 30%, 시군 70%, 기업 20% 이상
소방 안전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20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소방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70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붙임 1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 ※ 사업추진 완료 후 실적보고 시, 동일 장소·동일 각도의 전·중·후 비교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현장 사진 첨부 필수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1. 자부담 약약서 1부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2.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4.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	[서식2]사업추진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6.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7.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1부	[서식4]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8.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1부	
	9.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용) 각 1부	
	11.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등 증빙)	
	12.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2023~2025년 재무제표 및 2025년 과세표준증명원(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개인)] ※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사업에 한함	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불가 시 선정 불가
	13.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	1. 뿌리기업 확인서 1부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6. 최근 3개년 산업재해를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	
	7.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8. 여성기업 인증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9.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경기도 발급) 1부.	
	(비고)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	

붙임 2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1 노동복지(노동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지원내용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table><tr><th rowspan="3">순이익 구간</th><th colspan="3">재원 비율(%)</th><th rowspan="3">기업 자부담</th></tr><tr><th colspan="3">지자체 부담</th></tr><tr><th>소계</th><th>도</th><th>시군</th></tr><tr><td>5천만원 이하</td><td>80</td><td>30</td><td>70</td><td>20</td></tr><tr><td>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td><td>75</td><td>30</td><td>70</td><td>25</td></tr><tr><td>2.5억원 초과</td><td>70</td><td>30</td><td>70</td><td>30</td></tr></table>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기업 자부담	지자체 부담			소계	도	시군	5천만원 이하	80	30	7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75	30	70	25	2.5억원 초과	70	30	70	30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기업 자부담																							
	지자체 부담																										
	소계	도	시군																								
5천만원 이하	80	30	7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75	30	70	25																							
2.5억원 초과	70	30	70	30																							
지원한도	■ 지자체 부담 40백만원(도비 12백만원, 시군비 28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지원우대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¹⁾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²⁾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³⁾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⁴⁾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신규)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②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지원내용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지원요건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지자체 80%(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20%(이상)
지원한도	■ 지자체 부담 60백만원(도비 18백만원, 시·군비 42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신규)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1)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2)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3)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인 경우
 - 4)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일 기준「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따라 인증기간이 유효한 경우

③ 소방안전(작업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소기업 (제조업)																											
지원내용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설비, 생산설비 부착·결합 작업대(주문제작 등), 냉난방기, 작업환경 개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무·생활·청소용 비품 및 장비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table><tr><th rowspan="3">순이익 구간</th><th colspan="4">재원 비율(%)</th></tr><tr><th colspan="3">지자체 부담</th><th rowspan="2">기업 자부담</th></tr><tr><th>소계</th><th>도</th><th>시군</th></tr><tr><td>5천만원 이하</td><td>80</td><td>30</td><td>70</td><td>20</td></tr><tr><td>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td><td>75</td><td>30</td><td>70</td><td>25</td></tr><tr><td>2.5억원 초과</td><td>70</td><td>30</td><td>70</td><td>30</td></tr></table>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지자체 부담			기업 자부담	소계	도	시군	5천만원 이하	80	30	7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75	30	70	25	2.5억원 초과	70	30	70	30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지자체 부담			기업 자부담																								
	소계	도	시군																									
5천만원 이하	80	30	7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75	30	70	25																								
2.5억원 초과	70	30	70	30																								
지원한도	■ 지자체 부담 20백만원(도비 6백만원, 시군비 14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4 소방안전(소방시설)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지원내용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지원요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지식산업센터 : 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table><tr><th rowspan="3">순이익 구간</th><th colspan="4">재원 비율(%)</th></tr><tr><th colspan="3">지자체 부담</th><th rowspan="2">기업 자부담</th></tr><tr><th>소계</th><th>도</th><th>시·군</th></tr><tr><td>5천만원 이하</td><td>80</td><td>30</td><td>70</td><td>20</td></tr><tr><td>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td><td>75</td><td>30</td><td>70</td><td>25</td></tr><tr><td>2.5억원 초과</td><td>70</td><td>30</td><td>70</td><td>30</td></tr></table>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지자체 부담			기업 자부담	소계	도	시·군	5천만원 이하	80	30	7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75	30	70	25	2.5억원 초과	70	30	70	30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지자체 부담			기업 자부담																								
	소계	도	시·군																									
5천만원 이하	80	30	7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75	30	70	25																								
2.5억원 초과	70	30	70	30																								
지원한도	■ 총 70백만원(도비 21백만원, 시·군비 49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신규)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제외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주 동의 확보 필수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2022년~2026년)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불법건축물, 무허가 공장 및 가설건축물일 경우 지원 불가

[유의사항]

- 참여기업 모집은 도비 신청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 신청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를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의정부시 소재 시공업체와 계약 권장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취소가능
-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선정
- 공사업체 선정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하여야 함